|  |  |  |
| --- | --- | --- |
| **1.6.4 수입폐기물 원료검사 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통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2003]217호  각 직속 검사검역국，중국검험인증(집단)유한회사, 중국검험유한회사(홍콩):  국무원의 수입폐기물 원료관리를 강화에 관한 요구를 수행하고 수입폐기물 원료검사 검역감독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완벽화하며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현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1. 수입폐기물 원료 시장 입장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1）중국으로 폐기물 원료를 수출하는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및 대리기구는 반드시 품질검사총국에 등록하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래 수출한 화물의 환경보호, 품질상황과 해당 증명 등 해당문서를 제출하여 품질검사총국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 등록(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하여야만 중국에 폐기물 원료를 수출할 수 있다.  （2）수입 폐기물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아래 인가기구라고 약칭) 항구 검험검역기구는 등록을 거친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의 검사신고만 수리한다. 2004년 8월 31일 이전은 과도기로써 2004년 9월 1일에 등록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 검사신고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3）등록을 거친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그 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등록을 거친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는 등록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를 대체하여 중국에로의 화물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여 발견되면 그 등록자격을 취소한다.  2.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 관리  （1）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수입폐기물원료 검험검역 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관리규정과 방법을 제정하며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의 등록과 해외 검사기구의 심사, 인가를 책임진다.  （2）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품질검사총국의 인가를 거친 해외 검사기구 및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3）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에 대하여 인가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3.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는 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1）《상품검사법》의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는 신청을 제출하여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해외검사기구에 대하여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 인가 관리방법》（아래《방법》이라고 약칭）에 근거하여 심사, 확정하고 합격한 경우는 인가해주고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 증서》를 발급한다.  （2）현존의 선적 전 검사지정기구는 2003년 10월 1일 전에 《방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신청 자료를 국가품질총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필요 시 현장 심사진행) 합격 후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 인증서》를 발급하고 국가품질총국에서 위임한 인가기구가 될 수 있다.  （3）위임을 거친 인가기구의 직무 :  a. 품질검사총국의 등록을 거친 소재지 등록등기 무역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와 해외 기타 인가기구에 중국수입폐기물원료 관리의 법률법규와 품질검사총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해당규정을 홍보한다.  b.《방법》에서 규정한 각항 의무 외에 국가 해당 수입폐기물 원료의 법률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사업을 철저히 수행한다.  c. 사업 품질, 검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법률과 해당 책임을 진다.  d. 인가기구 검사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4）인가기구의 주요 직무  a. 반드시《방법》에서 규정한 각항 의무와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b. 사업품질, 검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법률과 해당 책임을 진다.  c. 위임을 접수하는 인가기구의 감독관리  4. 선적 전 검사  （1）국가에서는 수입을 허가한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선적 전 검사와 도착 후 검사를 결합한 검사감독 방식을 실시한다.  （2）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인가한 선적 전 검사기구는 지정한 지역과 범위 내의 폐기물 원료에 대하여 국가 해당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것은 선적 전 검사 합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현재 인가기구가 없거나 인가기구 자격이 임시 중단 혹은 취소된 지역의 수입폐기물원료검사에 대하여 도착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선적 전 검사를 진행하고 선적 전 검사 합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항구 검사감독 관리  （1）현재, 인가기구가 없거나 인가기구 자격이 임시 중단 혹은 취소된 지역에 대해 도착지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선적 전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수입폐기물 원료는 도착 항구에서 도착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도착한 화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의 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항구 검사검역기구는 그 신고검사 신청을 재차 수리하지 않는다.  （2）대상 항구 수입폐기물 원료를 실시한다. 수입폐기물 원료의 종류, 항구검험검사 기술수준, 검사 역량 배치와 검사 수단 배치 등 상황에 근거하여 점차 수입폐기물 항구검사검역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3）각 항구 검사검역기구는 반드시 국가 수입폐기물 원료에 관한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규정을 어기고 불합격 화물의 처리를 금지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당사자와 주관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인가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항구검사검역기구의 법 집행 사업을 간섭해서는 안 되며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한다.  （4）수입폐기물 원료 검사감독 설문서 제도를 건립한다.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입폐기물 원료에 대해 검사할 시 의문이 있거나 검사 파악이 불명확한 것은 설문서(첨부 1)의 형식으로 국가품질총국에 지시를 요청해야 하고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5）중대한 문제 보고와 신속한 위험경보 반응제도를 견지한다.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즉시, 정확하게 검사검역 불합격 상황(첨부2)을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인가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는 위험경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실시하여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을 수입하는 대외무역경제부서, 적송인 등 해당 무역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항구 검사검역기구와 인가기구는 수입한 폐기물 원료에 대해 엄격히 검사하고 검사신고 신청을 취소한다.  6. 각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미국 수입 폐 3호 폐지 혹은 미국 폐 3호 품질규격의 폐지의 검사 사업을 강화하고 불합격 화물이 국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사무실, 공업 폐기물에서 분리수거한 3호 폐지에 대해 표준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2）수입 3호 폐지에 생활 폐기물, 임상 폐기물 등의 휴대는 화물 총 무게의 만분의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각 검사검역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사업과 적합한 검사검측 설비를 갖추고 검사수준과 검사 효율을 제고하며 검사검역사업의 책임을 확대하여 독성유해폐기물이 국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8. 각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는 현지 세관, 환경보호 등 부서와의 연락을 강화하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검사를 거쳐 불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즉시에 세관에 넘겨주고 환경보호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2003년 7월 18일 |  | **关于进一步加强进口废物原料**  **检验管理工作若干意见的通知**  国质检检〔2003〕217号  各直属检验检疫局，中国检验认证(集团)有限公司，中国检验有限公司（香港）：  　　为落实国务院关于加强进口废物原料管理的要求，进一步加强和完善进口废物原料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规范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工作，现提出以下意见：  　　一、进口废物原料实行市场准入制度  　　（一）向中国出口废物原料的境外企业、加工生产企业及代理机构必须向质检总局提出注册的书面申请，并提供近年来的出口货物环保、质量状况和相关证明等有关文件，经质检总局审核合格后予以注册(具体办法另行制定)，方可向中国出口废物原料。  　　（二）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机构(以下简称认可机构)口岸检验检疫机构仅受理经注册的境外企业、加工生产企业、代理机构的报检。2004年8月31日前为过渡期，自2004年9月1日起未经注册的，不受理其报检申请。  　　（三）经注册的境外企业、加工生产企业、代理机构输入我国的废物原料不符合我国环境保护标准的，取消其注册资格。  　　经注册的境外企业、加工生产企业、代理机构不得替未取得注册资格的境外企业、加工生产企业、代理机构向中国出口货物。违反规定的，一经发现，取消其注册资格。  　　二、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管理  　　（一）国家质检总局负责统一管理进口废物原料检验检疫管理工作，负责制定有关管理规定和办法，办理境外企业、加工生产企业、代理机构的注册，组织考核、认可境外检验机构。  （二）国家认监委负责对经质检总局认可的境外检验机构及其实施的进口  废物原料装运前检验工作进行监督管理。  　　（三）对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机构实行认可管理制度。  　　三、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机构实行认可程序  　　（一）根据《商检法》的有关规定，国家质检总局对提出申请的符合规定条件的境外检验机构依据《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机构认可管理办法》(以下简称《办法》)进行审查、考核，对合格的予以认可，并颁发《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机构证书》。  　　（二）现行的装运前检验指定机构应于2003年10月1日前,按照《办法》要求向国家质检总局提交有关申请材料。经审查(必要时进行现场审查)合格后，颁发《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机构认可证书》，并成为国家质检总局授权的认可机构。  　　（三）经授权的认可机构的职责：  　　1.向经质检总局注册的所在地的注册登记贸易企业、加工生产企业、代理机构和境外其他认可机构宣传中国进口废物原料管理的法律法规和质检总局、认监委的有关规定。  　　2.除履行《办法》规定的各项义务外，严格执行国家有关进口废物原料的法律法规和规定，实施和完善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工作。  　　3.对工作质量、检验结果负责并独立承担法律和相关责任。  　　4.对认可机构的检验工作进行监督管理。  　　（四）认可机构的主要职责：  　　1.必须履行《办法》规定的各项义务和职责。  　　2.对工作质量、检验结果负责并独立承担法律和相关责任。  　　3.接受授权的认可机构的监督管理。  　　四、装运前检验  　　（一）国家对允许进口的废物原料实施装运前检验和到货检验相结合的检验监管模式。  　　（二）国家质检总局认可的装运前检验机构对指定地域和范围内的进口废物原料按照国家有关法律、法规和规定要求实施装运前检验。经检验合格的，出具装运前检验合格报告。  　　（三）对目前无认可机构或认可机构资格被暂停或吊销地区的进口废物原料检验。可由到货地口岸检验检疫机构派员进行装运前检验并出具装运前检验合格报告。  　　五、口岸检验监管  　　（一）目前，对无认可机构或认可机构资格被暂停或吊销的地区，到货地口岸检验检疫机构未派员进行装运前检验的进口废物原料，可在到货口岸，由口岸检验检疫机构进行严格的批批检验。若发现一次到货存在问题，则取消境外企业、加工生产企业、代理机构的注册资格。口岸检验检疫机构不再受理其报检申请。  　　（二）实行限定口岸进口废物原料。根据进口废物原料的品种、口岸检验检测技术水平、检验力量配备和检测手段配备等情况，逐步对进口废物原料口岸检验检疫实行集中管理。  　　（三）各口岸检验检疫机构必须严格按照国家有关进口废物原料的法律、法规和规定检验把关。严禁任何单位和个人违规处置不合格的货物，违反规定的，追究有关当事人和主管领导的责任。  　　认可机构不得以任何方式干预口岸检验检疫机构行政执法工作，一经发现，严肃处理。  　　（四）建立进口废物原料检验监管问答书制度。各直属检验检疫局在对进口废物原料检验把关时，遇有疑问或检验掌握不明确的，应以问答书(附件1)的形式向国家质检总局请示，不得擅自处理。  （五）坚持重大问题报告和风险预警快速反应制度。各直属检验检疫局要及时、准确地将检验检疫不合格情况(附件2)报国家质检总局，同时抄报国家认监委。国家质检总局启动风险预警快速反应机制，对进口不符合标准货物的外贸经营部门、发货人等有关贸易当事人予以通报，口岸检验检疫机构和认可机构要对其进口的废物原料加严检验，直至取消其报检申请。  六、现阶段，各有关检验检疫机构要重点加强对进口美废3号废纸或相当于美废3号质量规格废纸的检验把关工作，防止不合格货物进入国境。  （一）对由办公、工业废料中分选出的3号废纸按标准规定从严掌握；  　　（二）进口3号废纸夹带生活废物、临床废物等不得超过货物总重量的万分之一。  　 七、各有关检验检疫机构要尽快配备与检验工作相适应的检验检测设备，提高检验水平和检验效率，加大检验检疫工作把关力度，防止有毒有害废物进入国境。  　　八、各有关口岸检验检疫机构要加强与当地海关、环保等部门的联系，建立良好的合作沟通机制，对于经检验不合格的货物，要及时移交海关、环保部门处理。  质检总局  二○○三年七月十八日 |